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84

발의연월일: 2025. 4. 4.

발 의 자:김도읍・인요한・박성훈

조배숙 • 구자근 • 장동혁

이헌승 • 정점식 • 신동욱

김희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제33조와 제3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조문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, 특히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, 사회복지사,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,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관한

사항을 제33조로 일원화하고, 발달장애인 채용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 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권익 보장을 도모하고 자 함(안 제33조 및 제34조).

법률 제 호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 전의 제4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, 사회복 지사,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.
-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.
- ⑥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3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	제33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		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발		
	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		
	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		
	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		
	교사, 사회복지사, 변호사 등		
	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.		
<u> <신 설></u>	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		
	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		
	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		
	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		
	<u>있다.</u>		
<u>④</u>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	⑥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		
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	기준과 운영, 직원의 자격과 배		
과 운영,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	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		
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	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		
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	<u>다.</u>		
<u>⑤</u> ~ <u>⑦</u> (생 략)	<u>⑦</u> ~ <u>⑨</u> (현행 제5항부터 제7		
	항까지와 같음)		
제34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	제34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		
무) ①・② (생 략)	무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		
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	<u><삭 제></u>		

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 진 특수교사, 사회복지사, 변호 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 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.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<삭 제>